## 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

[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5. 9. 2018고단291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5인

【검 사】송형진(기소, 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창섭 외 2인

## 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1년, 피고인 3을 징역 8월, 피고인 4를 금고 8월에 각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, 피고인 3,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를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20,000,000원에, 피고인 6 회사를 벌금 5,000,000원에 각각 처한다.

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 2, 피고인 5 회사, 피고인 6 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,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1